

『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8월 23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9월 2일

제1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10월 10일

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황종철

나. 제안이유

- 승마장과 옥성자연휴양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할인하여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해 1일 기승 이용료 50퍼센트를 할인하거나 승마 또는 마차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별표 2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 및 제139조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.(2013.8.19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용 우

□ 본 '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 은,

- 승마장 및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- 그 주요내용으로는,
 - 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 속의 집 사용자)에 대하여 승마장의 이용료를 감면.

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적용.

- 1일 기승 : 이용료의 50% 감면.
- 마차체험 : 이용료의 전액감면.
- 승마체험 : 이용료의 전액감면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, 지방공공시설로 운영하는 승마장 및 자연휴양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므로,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